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II. 검토의견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고려하여,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우선, 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는 경찰청장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인사청문 공직후보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수사·기소 분리의 형사사법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정비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761호)」은 경찰청 앞에 중대범죄

수사청을 열거하는 방향으로 법문을 정비하고 있어서 이와 균형을 맞추어 검찰청장 앞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명시하고, 현행 법문 중 검찰총장의 경우 논리적 해석상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법」에 따른 공소청의 장인 검찰총장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검찰총장 부분도 개정문에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개정안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4조(인사청문 등에 관한 특례)¹⁾ 및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인사청문 등에 관한 특례)²⁾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 법 시행(2026. 10. 2.) 전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법무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면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미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례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상

1)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제4조(인사청문 등에 관한 특례) 대통령은 이 법 시행 전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면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미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2)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인사청문 등에 관한 특례) 대통령은 이 법 시행 전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면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미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임위원회가 이 법 시행 전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안 부칙에 ‘인사청문회에 관한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겠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